

제 503 호

1975. 5. 23.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관 직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 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955 호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 3

◎ 훈 령

제 407 호 : 서울특별시경찰국서정세신추진위원회설치
운영규정 4

◎ 고 시

제 73 호 : 도시계획시설(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결정 및 지적승인 6

제 74 호 : 도시계획사업(국민학교)시행허가 6

제 75 호 :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및 지적승인 8

제 76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일부변경 8

제 77 호 : 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및 지적승인 9

제 78 호 :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및 지적승인 9

제 79 호 : 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및 지적승인폐지.....10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공 고	
제 116 호 : 환지 계획 일부 변경 공람 공고	10
제 117 호 : 도시 계획 시설 (도로) 실시 계획 공람 공고	11
제 119 호 :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 내 환지에 정지 일부 변경 공람 공고	19
제 120 호 : 환지에 정지 변경 지정 공고	19
제 121 호 : 도시 계획 시설 (공원 용지) 실시 계획 공람 공고	20
◎ 예 규	
제 222 호 : 서울특별시 신발생무허가 건물 단속 규정	21
◎ 사 령	37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로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1975년 5월 23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955 호

서울특별시하천점용로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하천점용로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8호의 토산, 사력의 채취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 표 >

요 금 산 정 기 준 프

구 분	산 정 기 준
8. 토산, 사력의 채취	1. 채취된 원석 1㎏당 매출가액의 100분의 15 2. 매출단가의 산출은 다음에 의한다. 가. 허가시의 매출단가는 전년동기(영업세의 납기)의 매출 평균단가(총평균단가)가 최고인 업체의 실적에 의하고 나. 허가기간 종료후의 산정단가는 당해기간이 속하는 작업체의 영업세신고서(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한) 중에서 가장 높은 업체의 매출단가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정산단가가 허가시 적용단가보다 낮을 때에는 허가시 적용단가를 정산단가로 한다.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재정법시행령제 5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에는 제 1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매각되는 가액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별표유효기간) 별표요금산정기준중 제8호 토산, 사력의 채취에 관한 규정의 효력은 197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 경찰국서정쇄신추진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5. 5. 23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 서울특별시훈령 제 407 호

서울특별시경찰국서정쇄신추진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 1 조 (목적) 치안행정전반에 걸친 대민업무의 민폐서정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 경찰국에 서정쇄신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사항에 대한 실천은 소관기능을 통하여 시행케 한다.

1. 민폐업무의 시정을 위한 난기, 중기 및 장기계획수립과 조정통제
2. 추진실적의 평가, 분석
3. 대민업무의 민폐사정에 관한 실천사례의 발굴 및 개선방안 강구
4. 대민관계 행정 법령정비건의안건
5. 기타 서정쇄신에 관한 제반사항

제 3 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찰국장이 되고, 제 1 부위원장은 제 1 부국장, 제 2 부위원장은 제 2 부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각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감찰계장이 된다.

제 4 조 (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회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정기회의는 월 2 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소집한다.

제 6 조 (분과설치) 위원회에는 분야별 서정쇄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관별 분과책임자를 둔다.

1. 경무소관분과: 경무계장
2. 보안소관분과: 보안계장
3. 교통소관분과: 교통계장
4. 수사소관분과: 수사계장
5. 형사소관분과: 지능계장
6. 정보, 의사분과: 정보 1 계장

제 7 조 (분과의 임무) ① 각 분과에서
는 소관별로 대민업무의 민폐시정책
에 관한 단기, 중기 및 장기계획을
수립조정추진하고 그 실효를 위원회
에 보고한다.

② 대민업무의 민폐시정책은 다음 사
항을 고려하여 수립 추진한다.

1. 지도감독의 강화
2. 경비번칙 조달행위 시정
3. 각종제도의 개선
4. 대국민협조촉구를 위한 홍보강화
5. 기타 관련되는 행정사항

③ 단기, 중기 및 장기계획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단기계획은 현행제도와 법령의
범위내에서 즉시 실천이 가능한
사항
2. 중기 및 장기계획은 불합리한
법령, 조례, 규칙, 예산등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제도적개선 및 시정
을 요하는 사항

④ 제 2항 및 제 3항의 업무범위의
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1. 지도감독의 강화
가. 지도감독자지정
나. 소속공무원의 자세 확립과 자율
적단속
다. 부정사제유형별 요인분석과 감

육의 철거

라.감사확인제도의 강화와 압행감
할반 운영

2. 경비번칙조달행위시정
가. 번폐경리일소
3. 각종제도의 개선
가. 민원업무에 대한 관계경찰관
의 제량권 확장
나. 비현실적인 법령, 조례, 예산
등의 합리적계정 및 개선안
검토
4. 대국민협조촉구를 위한 홍보활동
가. 서정세신실천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촉구

5. 행정사항
가. 소속공무원의 대민업무 민폐
시정에 관한 교육실사와 기능
별 세부실천 계획수립

제 8 조 (협의) 각 분야에서 서정세
신에 관한 제반계획을 수립하거나
계별적 지식을 시달할 때나 대외
로 관계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의를 거쳐야
한다.

제 9 조 (운영체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73 호

도시계획시설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을 다음과 같이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5. 21

서울특별시장

가.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칭	위 치	면 적
신설	강안쓰레기 및오물처리장	성동구양정동73번지 일부지역	108,010㎡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관할구청에 보관

○ 서울특별시고시제 74 호

도시계획사업 (국민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30 호 (75.2.21)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사된 당시 도시계획사업인 증산국민학교 종합시설의 사업시행을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제 123 호 (73.4.4)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를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5. 21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산동 62-2 의 20'필지 (별첨)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증산국민학교 종합시설
3. 면적 또는 규모: 11,934.7㎡
4. 시행지구소및성명: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관
5.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1975.5.15-76.2.28
6. 위치 및 계속면적: 별첨 (도면생략)
7. 공사설계도면: 별첨 (도면생략)

※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서대문구청에 보관

사 업 사 행 지					
소재지	지 번	지목	구획번호	지 적	비 고
서대문구 중산동	62 - 2	전	319	98.3	
		"	319-3	61.9	채 비 지
	62 - 1	"	319	116.8	
	59 - 1	"	319	508.8	
		"	319-1	330.8 평중 240	채 비 지
	64 - 5	"	319	108.5	
		"	319-2	41.4	채 비 지
		"	330-4	154.7	채 비 지
	64-1(개)	"	330-가	126.9	
	64-1(내)	"	336-나	234.6	
	64 - 3	"	330	62.8	
	64	"	330	90.2	
	138	"	330	527.5	
	139 - 1	"	330	83	
	139 - 3				
	140	"	330	154.2 평중 92	
		"	336-3	130.5	채 비 지
	산 24-12	임	336-1	218.8	
	136	전	337	189.2	
	136 - 1	"	336-1	64.3	
136 - 3	"	337	98.2		
		도로		367.6	
	계			3,616 (11,934.7) 평	

◎ 서울특별시고시 제 75 호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다음과 같이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동법 제 13조와 전설부고시 제 123 호 (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출장소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5. 23

서울특별시장

가. 시설(학교)조서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상문중고등학교	성동구서초동 1170-3 호의 9 필	52,589.3㎡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서대문구청에 보관.

◎ 서울특별시고시 제 76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일부변경

1. 당시판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지적일부 변경하여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조와 전설부고시 제 123 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마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5. 23

서울특별시장

가. 노선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 점	광로		31	50m	868m	공덕동노타리	서울대학교북단	지적일부
변경	"		"	"	"	"	"	변경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 및 마포구청에 보관

◎서울특별시고시제 77 호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결정 및 지적승인

1. 도시계획 (운동장, 정구장) 시설 결정과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34 호 (73.11.5)에
- 가.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설동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5.23.

서울특별시장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운동장 (정구장)	설동구논현동 32-6 (라)	6,941.8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해당구청에 보관.

◎서울특별시고시제 78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학교) 을 다음과 같이 시설결정 및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
- 가. 시설 (학교) 조서

(73.4.4)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5.24.

서울특별시장

단위: ㎡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발산국민학교	영등포구의 발산동 341 번지의 17 필지	13,441.3	
행당여자중학교	설동구행당동 70-14 의 4 필지	13,193.4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강 서 중 학 교	영등포구북산동산 60-1 외 2 필지	12,533.9	
봉 천 중 학 교	관악구봉천동 산 65-1 외 1 필지	20,783.5	
면 옥 중 학 교	중대문구면옥동 산 35-2 외 3 필지	14,059.5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해당구청에 보관.

◎서울특별시고시제 79 호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 및
지적승인 폐지.

1. 서울특별시고시제 90 호 (72.6.14) 로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 및 지적승인된 수송슈퍼마켓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폐지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5. 26.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 및 지적승인

구분	시 설 명	위 치	폐지면적	비 고
폐지	수송슈퍼마켓	종로구수송동 51-1 일부지역	3,200 ㎡	

별첨 :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관할구청에 보관.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116 호

환지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신림, 신림추가, 시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써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47 조, 제 55 조, 제 33 조 및 행정편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 제 1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공람 공고한다 .

2. 환지계획변경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3. 서류송달은 별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될 것이나 미 수령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 한다 .

1975. 5. 22.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 1. 사업명 : 신림, 신림추가, 시흥토지구획정리사업
- 2. 변경지역 : 서울시 관악구사당동, 봉천동, 신림동, 영등포구 독산동, 시흥동 일부지역
- 3. 필지수 : 188 필지
- 4. 변경조서 및 도면 : 조서별첨, 도면생략 (서울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

◎서울특별시공고제 117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 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제 198 호 (71.4.7) 로 고시된 공덕동 노타리~서울대교간 도로확장공사에 저촉되는 토기 및 건물의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

1975. 5. 1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 1. 사업시행위치 : 마포구도화동, 마포동 공덕동
- 2. 사업의 종류및명칭 : 공덕동노타리~서울대교간 도로확장공사
- 3. 사업의규모 : B = 24 m - 50 m
L = 860 m
-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6. 사용토는 수용할토지 : 별첨토지조서
- 7. 토지토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 조 3 항의 관계인주소 . 설명 : 별첨토지조서

토 지 조 서

순 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감)			소 유 자		성 명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1	도화동	48-2	대	77.8	48-12	대	55.0	마포동 188		학교법인 중앙 의실 김구인
2	"	48-3	"	105.7	48-13	"	81.6	도화동 34		김익홍외 4인
3	"	48-4	"	21.9	48-14	"	4.4	도화동 34-2		서 정 부
4	"	292-22	"	69.0	292-29	"	50.6	마포동 163-4		노 경 숙
5	"	292-23	"	33.2	292-30	"	27.0	대흥동 77.5		이 만 이
6	"	292-24	"	50.8	292-31	"	34.6	도화동 292-24		조 영 규
7	"	292-25	"	44.3	292-32	"	14.0	" 292-25		강 정 원
8	"	292-26	"	413.0	292-33	"	15.8	" 41		박 인 출
9	"	168-5	"	308.6	168-14	"	121.7	북창동 75		장 희
10	"	168-6	"	160.7	168-15	"	89.6	"		"
11	"	175-2	구	31.0	175-10	구	3.0			국
12	"	175-3	대	364.1	175-11	대	57.7			국
13	"	175-4	"	180.4	175-12	"	68.5	도화동 33-20		강 경 만
14	"	175-5	"	191.6	175-13	"	61.3	신문로 2가 1-105		이 정 혜
15	"	174-1	"	333.6	174-9	"	97.4	보문동 2가 75-6		이 의 신
16	"	174-4	"	503.3	174-10	"	122.4	도화동 18-14		윤 부 용
17	"	174-6	"	191.6	174-11	"	96.8	"		"
18	"	39-1	"	57.9	39-9	"	26.2	도화동 33-4		김 성 곤
19	"	39-2	"	75.3	39-10	"	12.2	"		"
20	"	39-3	"	11.5	39-11	"	1.1	중구남대문로 2가		한국전력(주)
21	"	180-12	"	87.0	180-19	"	71.6	180-5		심 원 봉
22	"	180-5	"	115.0	180-16	"	2.6	"		"
23	"	180-6	"	242.8	180-17	"	78.9	"		국

순 위	소 계지	본 합 전 표 시			본 합 후 표 시 (수용대장)			소 용 자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24	도화동	160-10	대	164.0	160-18	대	84.7	공덕동 252-7	오 준 근
25	"	176-2	"	199.2	176-15	"	47.0	도화동 179-7	정 명 섭
26	"	176-12	"	111.0	176-21	"	66.9	" 33-37	안 창 보
27	"	176-11	"	122.8	176-20	"	74.6	마포동 18	김 포 익
28	"	17-3	"	9.0	17-18	"	3.0	43-43, 4-41	선현옥, 산우용
29	"	17-4	"	631.8	17-19	"	201.4	"	"
30	"	17-16	"	91.8	17-20	"	46.2	"	국
31	"	17-17	"	84.6	17-21	"	45.4	"	국
32	"	25-19	철	7.3	25-52	철	1.9	"	국
33	"	18-1	대	085.5	18-10	대	301.3	마포동 20-1	김순희외 9인
34	"	180-1	"	73.5	180-13	"	11.4	신공덕 58	이 운 섭
35	"	180-3	"	16.1	180-10	"	0.3	홍제동 267-47	윤 기
36	"	180-8	구	4.0	180-15	구	3.4	"	시
37	"	39-4	대	408.4	39-12	대	163.4	도화동 20-1	서 병 용
38	"	39-8	"	104.3	39-13	"	18.9	중로 2가 9	동양고속운수(주)
39	"	39-5	"	2,866.6	39-14	"	120.3	"	"
40	"	39-7	"	100.0	39-15	"	42.6	"	"
41	"	51-1	"	100.4	51-4	"	66.0	"	시
42	"	51-2	"	99.6	51-5	"	75.1	도화동 40-19	박 용 섭
43	"	176-10	"	51.8	176-19	"	45.7	" 53-9	김 영 필
44	"	176-9	"	39.7	176-18	"	7.8	" 457	고 기 순
45	"	176-8	"	38.1	176-17	"	33.7	" 176-8	김 성 준
46	"	51-3	"	301.7	51-6	"	2.9	" 33-5	고순아의 4인
47	"	176-7	"	230.8	176-16	"	77.5	중구율지로 2가	홍익사의 2인
48	"	169-1	"	673.1	169-15	"	117.5	원효로 4가	효양산업(주)

순 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량)			소 유 자		성 명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49	도화동	169-6	대	822.8	169-16	대	162.4	해화동 5-22	이 정 함	
50	"	169-7	"	384.1	169-17	"	109.0	해화동 142	남 대 섭	
51	"	169-11	"	299.0	169-19	"	92.9	"	"	
52	"	169-8	"	76.5	169-18	"	47.6	해화동 5-72	이 정 함	
53	"	168-1	"	30.5	168-10	"	29.0	해화동 142	남 대 섭	
54	"	168-2	"	8.0	168-11	"	2.7	북창동 175	장 쇠	
55	"	168-3	"	118.1	168-12	"	7.2	"	"	
56	"	168-9	"	34.0	168-16	"	29.3	북창동 20-3	박 대 영	
57	"	50-1	"	751.0	50-4	"	227.3	도화동 33-5	고 순 이	
58	"	50-2	"	833.4	50-5	"	235.0	신공덕동 4	학교법인중앙 의성의 4인	
59	"	48-1	"	292.9	48-11	"	82.5	"	김익홍의 4인	
60	"	168-4	"	11.7	168-13	"	8.8	북창동 75	장 쇠	
61	마포동	33-9	"	58.7	33-20	"	18.6	마포동 1-2	지 상 길	
62	"	33-10	구	44.2	33-21	구	14.5	"	시	
63	"	33-11	대	36.0	33-22	대	32.0	5-1, 4-3	조수환, 조수현	
64	"	33-12	"	4.8	33-23	"	4.6	남대문로 1가 14	(주) 조흥은행	
65	"	33-13	"	127.6	33-24	"	67.3	"	"	
66	"	33-14	"	50.6	33-25	"	1.9	"	국	
67	"	34-8	"	49.7	34-28	"	5.7	3-5	박 준 형	
68	"	34-9	"	69.8	34-29	"	51.7	4-1	조 두 현	
69	"	34-15	"	35.2	34-30	"	7.7	304	해동의 광	
70	"	35-2	"	68.9	35-30	"	33.2	마포동 15	김 형 락	
71	"	177-1	"	29.0	177-2	"	23.5	" 177	지 설 울	
72	"	176-1	"	29.0	176-2	"	16.0	" 177	"	
73	"	174-2	"	49.2	174-5	"	20.1	" 173	이 회 병	
74	"	167-2	"	115.0	167-3	"	69.1	" 359	허 관 수	
75	"	163-3	"	64.1	163-8	"	21.5	" 163-3	김 종 환	
76	"	163-5	"	46.2	163-9	"	29.4	평 동 13-68	김 용 무	

순 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 유 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77	마포동	163-7	대	31.5	163-10	대	22.9	평동 13-68	김 욱 목
78	"	154-1	"	15.6	154-4	"	6.3	"	"
79	"	154-2	"	20.0	154-5	"	19.0	" 163-4	이 오 석
80	"	154-3	"	30.0	154-6	"	1.2	" 154-3	정 준 섭
81	"	154-1	"	47.2	154-6	"	36.0	" 311	이 영 우
82	"	139-5	"	2.1	139-8	"	1.1	인취시 북동	김 근 자
83	"	139-1	"	15.9	139-11	"	8.0	"	"
84	"	137-1	"	58.6	137-5	"	17.3	신공덕 130-25	유 준 현
85	"	35-4	"	59.8	35-31	"	39.8	" 35	강 세 호
86	"	35-5	"	60.1	35-32	"	42.3	" 35	"
87	"	35-7	"	27.9	35-33	"	18.3	" 15	김 형 락
88	"	35-9	"	39.8	35-34	"	0.1	대흥동 443	이 금 중
89	공덕동	435-3	"	605.3	435-10	"	112.6	" 439	강영수외8인
90	"	438-4	"	6.0	438-19	"	5.2	" 422-1	이 섭 주
91	"	438-7	"	92.0	438-8	"	15.0	인취시동구만석동	대성목제(합동)
92	마포동	35-3	"	39.9	35-8	"	39.9	도화동 291	장 세 호
93	"	34-14	"	12.1	34-14	"	12.1	마포동 34-14	이 치 운
94	"	34-13	"	20.4	34-13	"	20.4	" 304	해 동 의 선
95	"	34-12	"	9.5	34-12	"	9.5		국
96	"	34-10	"	1.9	34-10	"	1.9		국
97	"	34-11	"	1.3	34-11	"	1.3		국
98	"	175-2	"	6	175-2	"	6	마포동 177	지 실 일
99	"	175-4	"	6	175-4	"	6	"	"
100	"	175-6	"	16	175-6	"	16	마포동 175-6	박 기 만
101	"	175-5	"	4	175-4	"	4	"	박 기 만

순 위	소재지	분할건표시			분할유표시 (수용대상)			소 유 자		성 명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102	마포동	174-3	대	20	174-3	대	20	마포동 175-6	박 기 만	
103	"	174-4	"	6.8	174-4	"	6.8	"	"	
104	"	168-2	"	15.7	168-2	"	15.7	"	"	
105	"	168-3	"	1.3	168-3	"	1.3	" 174-2	이 히 병	
106	"	165-2	"	20	165-2	"	20	" 163-3	김 충 배	
107	"	163-2	"	26.3	163-2	"	26.3	" 163-3	"	
108	"	163-4	"	8.3	163-4	"	8.3	" 163-4	이 오 석	
109	"	163-6	"	12.1	163-6	"	12.1	성북구삼선동3가산43	황 영 길	
110	"	155-1	"	53	155-1	"	53	마포동 155-1	장 사 숙	
111	"	155-3	"	9.4	155-3	"	9.4	" 155-3	황 봉 재	
112	"	164-1	"	7.5	164-1	"	7.5	" 163-2	김 중 환	
113	"	156-4	"	2.2	156-4	"	2.2	" 311	이 명 우	
114	도화동	174-8	"	14.5	174-8	"	14.5	도화동 16-14	윤 부 용	
115	"	175-9	"	12.8	175-9	"	12.8	"	부 국	
116	"	25-15	철	7.3	25-15	철	7.3	"	국	
117	"	25-16	"	6.3	25-16	"	6.3	"	국	
118	"	25-17	"	4.7	25-17	"	4.7	"	국	
119	"	25-18	"	6.3	25-18	"	6.3	"	국	
120	"	180-2	대	0.8	180-2	대	0.8	"	시	
121	"	176-1	"	10.9	176-1	"	10.9	도화동 179-7	정 평 섭	
122	"	168-7	"	69	168-7	"	69	마포동 9-3	지 상 길	
123	"	168-8	"	101.2	168-8	"	101.2	도화동 33-9	지 성 경	
124	공덕동	441-8	"	38	441-8	"	38	인취시동구민식당33	배삼복(주)	
125	"	441-5	"	14	441-5	"	14	공덕동 422-1	이 성 태	
126	마포동	136-1	"	88.1	136-1	"	0.3	마포동 155	오 세 완	

소재지	구 조	평 수	소유자주소	성 명
도화동 18-1	철근콘크리트	1층349.04, 2층 188.10, 3층134.20	도화동 16	주식회사 김동업
33-5	연화조단층, 연화조와습	1층 18, 2층 15, 25, 20	용강 483 도화동 11대동 43	김동업 박기순
"	목조와습	12	도화동 33-5	"
33-17	연화조와습	1층 61, 2층 25	캐나다유니타리안	대표업 박후영
33-18, 22	세멘트블록조옥육근	1층 62.61 2층 117.02	도화동 33-18, 22	"
"	연화조 합석층	11.22	"	"
33-27	연화조 와습	1층 40.4 2층 10.41	신문로 2가 1-10	이정예
34-1, 3	목조도단층	1층 13.5 2층 9	도화동 34-1	김주업
"	"	1층 13 2층 8	용강동 48	진덕복
"	"	1층 3.75 2층 8	마포동 4-1	이오경
"	"	1층 13.75 2층 5	도화동 34	김익홍
39-1, 2, 3	복조세멘트블록조 스테트층	30	도화동 33-4	김성권
39-4	철근콘크리트평육계	1층135.53, 2층139.18, 3층84.37	" 20-1	서병용
39-5	철근조 스테트층	123.09	부교동 32-2동양교	이민하
"	철판조 스테트	3	소공동 44-1 순수	"
669-7, 8	철근콘크리트평육계	72.25	계동 142	남대립
51-1	"	1층 75.05, 2층 62, 3층 12.73	도화동 51-1	김희순
174-1	"	1층 109.91, 2층 82.41, 3층 82.41	보문동 2가 75-6	이외재
175-4	"	1층 53.16, 2층 53.16, 3층 53.16	도화동 33-20	강경만
176-12	목조도단층	35	신공덕동 15-1	안창보
176-11	목조와습	35	"	한국산악연맹
176-8	철근콘크리트평육계	10.66	도화동 176-8	홍성창
29-124	목조와습	1층 26.6 2층 13.4	" 7-48	김대규
마포동 13-7	연화조와습	1층 42, 2층 18	마포동 15	김형탁
33-9	목조와습	1층 40 2층 9	마포동 33-9	지성경
33-11	"	9.06	토정동 3 AP7-202	이오경
"	연화조와습	5.33	"	"
34-9	목조와습	13	마포동 35	고병선
35-1, 3, 4, 5, 7	세멘트블록조 스테트층	16.98	"	김형탁
17	연화조평육계	1층 150.47, 2층 136.31, 3층 136.29 4층 64.89, 옥탑 3.61	"	"

소재지	구 조	평 수	소유자주소	성 명
마포동 139-4	목조와즙	12	마포동 139-4	남현복
164-3	연와조와즙	1층 5.41 2층 10.91	" 154-3	정준섭
155-1	철근콘크리트평육개연화조	1층 39.08 2층 40.08 3층 23.50	" 155-1	오세완
156-1	철근콘크리트평육개	1층 40.16 2층 41.71 3층 26.41 4층 26.41	" 311	이영우
155-3	"	1층 8.23 2층 8.68 3층 8.68	" 155-3	황봉재
163-2	목조세멘와즙	1층 19 2층 19	" 163-2	김중환
163-4 154-1	연와조와즙	1층 13.50 2층 13.35	" 163-4	이오석
168-2 174-3	철근콘크리트조평육개	1층 38 2층 38 3층 38 4층 5.78	도화동 457	박기만
174-4	세멘벽돌조평육개	1층 20.81 2층 20.81	마포동 174-2	이희병
174-2	세멘벽돌조평육개	1층 20.81 2층 20.81	도화동 459	박기만
175-5.6	철근콘크리트조평육개	1층 18.50 2층 37	"	"
176	목조세멘와즙	9.50	"	"
176	"	1층 9.33 2층 9.33	"	"
177 175-4,2	연와조와즙	1층 32 2층 32	마포동 177	지설일
공덕동 438-4	세멘벽돌조평육개	1층 9.77 2층 9.77	공덕동 422-1	이성래
238, 239	연와조평육개	25.83	도화동 196-12	김병진
238	목조와즙	1층 12.5 2층 12	" 18-1	고준천
434-4 442-4	연와조와즙	1층 22.50 2층 11.50	공덕동 435-3	김정희
443-2,3	부력조스케트	34.2	도화동 4-43	신준철
도화동 17-4	목조와즙	51	남대문로 1가 14	김조홍연
마포동 9-3,8,9,11	"	4	"	"
도화동 34-1	연와조와즙	1층 188.2 2층 184.3	도화동 43 개신안중앙	김극인
34-1	세멘벽돌조와즙평육개	4.33	" 40-1 외투	"
마포동 169	목조세멘와즙	18.84	마포동 169	허관수
163-6	연와조와즙	1층 10.66 2층 10.66 3층 10.66	삼선동 3가산 44	황영길
도화동 51-2	목조와즙	15.58	신당동 298-25	지태환
"	세멘부력도단즙	28	"	"
168-9	목조세멘와즙	15.83	도화동 124	임창엽
"	"	11.84	북창동 20-3	박대영
176-7	철근콘크리트평육개	86.43	도화동 179-3	김주열

◎서울특별시 공고제 119 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환지
예정지일부변경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창동, 망우, 경인, 화양, 역촌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환지에정지를 일부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 47 조 및 동법 제 55 조와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람공고한다.
2. 환지에정지 변경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 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3. 서류 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는 별도 송달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5. 5. 26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1. 사업명:역촌, 창동, 망우, 경인, 화양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
2. 변경지구:서울특별시도봉구창동, 공농동, 동대문구 중화동, 성동구 자양동, 영등포구 신월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일부토지

3. 변경필지수: 48 필지

4. 변경조사 및 도면

조사-별첨, 도면-별첨(생략)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 과에 비치)

◎서울특별시공고제 120 호

환지에정지변경지정공고

1. 역촌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이공사로 환지처분 보류지인 162 구획의 환지에정지 지정지를 금번 공사시행으로 소정의 환지 감보율(6.2%증가) 적용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서울특별시공고제 97 호(75.2.29)로 공람 공고한바 있는 관계토지에 대하여 별첨조사 및 도면과 같이 변경지정 하엿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 제 55 조 및 제 56 조와 시행조례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2. 환지에정지가 변경지정된 토지의 사용수익은 공고일로부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한다. 다만, 정지 미완료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환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토지는 공사완료 및 다른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사용 수익을

하게 된다.

3. 환지에정지 변경 지정서 및 변경 도면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과와 관할출장소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하며 토지소유자에게는 별도 송달될 것이나 미수령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5. 5. .

서울특별시장

첨부: 환지에정지 변경지정서 및 변경도면: 조서별첨, 도면생략(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과 및 관할출장소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제 121 호

도시계획시설(공원용지)
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제 460호(73.11.22)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된 바 있는 서대문구의주로2가16의 52호의 62필지에 대하여 공원시설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녹지국 공원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3. 본 공고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로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대하여는 이 공고를 통지에 가름한다.

1975. 5. .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1. 사업시행의위치: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외주로2가16의 52호의 62필지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종류-근린공원시설
명칭-외주로공원
3. 사업의규모: 5,302.9 평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 별첨토지조서
6. 착수 및 준공예정일:
75.6. . - 75.11.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 주소, 설명: 별첨

예 규

◎서울특별시에규제 292 호

서울특별시신발생
무허가건물단속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신발생무허가건물의 예방단속 및 근절을 위한 제반 단속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발생무허가건물」 (이하 무허가건물 이라 한다) 이라 함은 70.6.20 이후 적법한 허가없이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2. 「건물」 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것을 말한다.

3. 「가설건축물」 (이하 가설물 이라 한다) 이라 함은 건축법 제 47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74 조에서 규정한 건물로서 별표 1에 제기한 것을 말한다.

4. 「부수시설」 이라 함은 건물에 부수된 시설로서 차광막, 물탱크

빛물받이, 비가리 (쟁), 대문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서 이는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5. 「행정조치건물」 이라 함은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한 입시 대책의 일환으로 행정목적 수행상 필요에 따라 취하여진 초가저봉개량, 니화단장, 건물의 이동정리, 가수용 및 기타 행정상 필요한 조치를 받은 건물을 말한다.

6. 「예방단속」 이라 함은 무허가 건물을 축조시 지붕이 시공되기 이전에 단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단속의 대상) 건축법 기타 실정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승인 및 협의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이전), 대수선, 주요변경 또는 용도 변경을 한 건물은 모두 단속의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무허가 건물의 대수선 주요변경 및 용도 변경도 또한 같다.

제 4 조 (단속의 책임소관부서) ①임야 (그린벨트포함), 공원, 녹지, 도로, 하천, 구거부지등 공공용 지역에서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예방단속과 적발 및 철거책임소관부서는 각 공공용지의 관리부서에서 관장한다. 다만,

철거작업에 대하여는 구, 출장소 주백(건축)과에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 이외 지역에서의 무허가 건물외 예방단속과 적발책임은 동장, 파출소장이 지고 철거책임은 구, 출장소장이 진다.

③적법건물의 대수선 주요변경 및 용도변경의 단속 및 시정 책임은 건축허가부서에서 주관하되 단속업무 종사직원이 적발시에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행정조치위반건물에 대한 단속과 시정책임은 구, 출장소장에게 있다.

제 5 조 (단속체제의 확립)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예방단속, 적발 및 철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 구, 출장소 및 동, 파출소에 다음과 같은 단속체제를 확립 운영한다.

1. 본청에는 점검순찰반을 둔다.
2. 구, 출장소에는 기동순찰반과 철거반을 두되 특히 취약지구에는 필요한 초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동, 파출소에는 지역담당순찰제와 동, 반장 및 주민신고제를 활용 운영한다.

제 6 조 (단속체계운영방법) 전조의 규정에 의한 단속체계의 운영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순찰반운영 : 본청 점검순찰반 및 구, 출장소의 기동순찰반(싸이카)은 취약지구순찰을 위주로 하되 점검확인 기타 수명사항에 따라 순찰하고 그 상황을 일지에 기록 보고한다.
2. 철거반운영 : 철거반은 정규직원을 반장으로 한 단속원으로 구성하고 시장, 구, 출장소장의 처리 지시사항과 동적발보고분에 대한 철거업무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복명한다.
3. 지역담당순찰제 실시 : 동장 및 파출소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지역을 순찰케 하고 그 결과를 순찰일지에 기록하여 적발사항은 구, 출장소장에게 즉보한다.
4. 주민신고제 실시 : 시, 구, 동의 민원신고센타를 활용 신고사항을 대장에 등재하여 타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회시한다.

제 7 조 (항공촬영업무처리) ①시장은 항공촬영을 년 3회(다만, 특정지구는 1회) 실시하여 지상건물의

별동상황을 단독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한 합측판독 및 처리조서에 약식 현황도를 첨부하여 구, 출장소장에게 처리 지시한다 .

②구, 출장소장은 전항의 지시된 사항을 동장에게 시달 현지조사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

③전항의 조사결과를 구, 출장소장은 허가건물에 대하여는 필히 허가대장의 조회등으로 재확인 할것이며 기타 사항은 합측판독 및 처리조서에 의거 엄격히 구분 기재하여 그 결과를 지시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한다 .

④구, 출장소장은 조사 결과 적출된 신발생무허가건물은 즉시 철거 조치하고 철거사항을 사후에 점검 확인한 후 그 처리결과를 분석 사전적반 및 철거불이행등 단속책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문책하여야 한다 .

제 8 조 (지상촬영감시) ①시장, 구, 출장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취약지구를 선정하여 지상촬영 감시할 수 있다 .

②지상촬영판독결과 적출된 건물에 대하여는 합측 결과처리의 절차를

준용하여 조치한다 .

제 9 조 (철거업무처리) ①신발생무허가건물의 철거는 행정대집행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건축중이거나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구, 출장소장은 건축법제 53 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철거할 수 있다 . 다만, 즉시 철거의 경우에도 1 차 지진철거를 권유한 이후 대집행 할 수 있다 .

③철거는 건물의 기초부분까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동장 및 파출소장은 철거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④단속원은 철거업무에 전담하되 구, 출장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 업무를 명할 수 있다 .

⑤공공, 공용 및 공익건물은 철거에서 제외하고 관제기관에 통보한다.

⑥행정조치위반건물은 별도 시장 방침에 따라 처리한다 .

제 10 조 (단속업무관계공무원의 신상필

별) ①신발생 무허가건물단속 업무 중사직원으로서는 업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한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단속업무중사공무원의 향측처리분석 결과에 따른 처벌기준은 별표 2에 의한 문책기준표에 의한다. 다만, 경찰공무원은 자체문책 기준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제 11 조 (위반건축주처벌) ①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건물용 건축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 8 장 (벌칙편)을 적용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업무의 세부처리방법은 따로 정하는 건축자정보 및 고발요령에 의한다.

제 12 조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1) 제 9 조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신발생무허가건물의 철거를 대집행할 경우 그 비용을 건축주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주가 부담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집행비용의 징수방법과 절차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 13 조 (보고) 구,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월보로 시장에게 보고한다.

1. 신발생무허가건물처리상황 (별지 2호 서식)

- 부표 1) 단속수단별 처리현황
- 2) 발생지역별 현황
- 3) 구조 및 용도별 현황
- 4) 구조 및 규모별 현황

2. 무허가건물단속관계공무원 문책상황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75.7.1 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종전의 신발생무허가 건물단속에 대한 지시 및 통첩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종전의 지시통첩에 의하여 처리중인 것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별표 1 >

1. 유행 또는 전람회용 건축물
2. 공사용 건축물
3. 건설후시설
4. 축사
5. 퇴간
6. 퇴비저장고
7. 농막
8. 농산물적치장
9. 분뇨크 및 기름탱크보조시설
10. 생산물적치장

<별표 2>

1. 계약단속 및 적반채입불이행 (중추포함)

구 분	정 계			구 조 및 규 모	대 상			비 고
	① 동 수 기 준				② 형 태 기 준 (1 동 당)			
	파 면	감 봉	견 책		파 면	감 봉	견 책	
투 담 당 (기동순찰반) (파출소지원)	5 동	3 동	2 동	철근콘크리트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15 명 이상	15 명 미만		
				부력조, 목조 기타 이 와 유사한 구조	30 명 이상	15 명 이상	5 명 이상	
사 무 장	지 원 3 명	지 원 3 명 감 봉 이상	지 원 3 명 견 책 이상		지 원 3 명	지 원 3 명 감 봉 이상	지 원 3 명 견 책 이상	
동장 (파출소장)	지 원 4 명	지 원 4 명 감 봉 이상	지 원 4 명 견 책 이상		지 원 4 명	지 원 4 명 감 봉 이상	지 원 4 명 견 책 이상	

2. 철거책임 (중추포함)

구 분	정 계			구 조 및 규 모	대 상			비 고
	① 동 수 기 준				② 형 태 기 준 (1 동 당)			
	파 면	감 봉	견 책		파 면	감 봉	견 책	
담 당 지 원 (서담당)	5 동 이상	3 ~ 4 동	2 동	철근콘크리트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15 명 이상	15 명 미만		
				부력조, 목조 기타 이 와 유사한 구조	30 명 이상	15 명 이상	5 명 이상	
단 속 계 장	15 동 이상	10 동 이상	5 동 이상		7 동	5 동	3 동	
주 택 (건축) 과 장	45 동	30 동	10 동		20 동	15 동	10 동	
건설 관리 국 장	45 동 이상				20 동			

※ 불완전철거 및 철거지연은 본철거에 준하여,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3. 허위보고 : 감 봉 이 상

4. 기간산정 : 1회 함축기간을 기준한다.

※ 함축에 의한 발생구분은 함축판독조서에 의한다.

별지제1호서식
①도면번호

구 동

197 제 차 량 측 환 목 및 처 리 조 서

②지시번호:진 측 2054.51 ~ (7. . .)
③보고번호:주력건축 2054.51 ~ (7. . .)

구 동	⑥ 관목사항(본청)				⑭ 원 지 조 사 확 인 사 함 (구. 동)													⑮ 부정및처리(구)			⑯ 종결처리(본청)			⑰ 미결사유(본청.구청)															
	위 치		⑩ 건축시기	⑪ 추정평수	⑫ 발생구분	⑬ 건축형태	⑮ 위치 동(법정) 번지.호	⑮ 건축구	⑰ 전 평	⑱ 적법및행정조치내용					⑲ 대 구 지 구 구 분	⑲ 지 구 구 분	⑲ 구 조	⑲ 건축형태	⑲ 전 물		⑲ 부수시설	⑲ 비건물	⑲ 원 일	⑲ 처 리 구 분	⑲ 확 인 자 인	⑲ 내 용	⑲ 보 조 도	⑲ 정 리 된	⑲ 미 결 사 유	⑲ 구 분(내용)									
	① 정 동	② 북								③ 반	⑱ 구 분	⑲ 번 일 일	⑲ 번 호	⑲ 취 급 부 서					⑲ 확 인 자 인	⑲ 소 유 분											⑲ 주 거	⑲ 비 주 거	⑲ 주 거	⑲ 비 주 거	⑲ 일 일	⑲ 처 리 구 분	⑲ 내 용	⑲ 보 조 도	⑲ 정 리 된

< 조 서 기 계 요 령 >

- ⑥ 구 분 : 허가, 신고, 기한부신고, 미화지시, 재개발, 현지개발, 가수용건물이동
- ⑩ 취급부서 : 시, 구, 동
- ⑭ 확인자 : 취급부서의 확인자인
- ⑱ 대지소유구분 : 공공용지, 타인대지, 자기대지
- ⑲ 지구구분 : 그린벨트, 공원녹지, 하천부지, 도로부지, 농촌지구, 주택지구
- ⑲ 구 조 : 철근, 연와, 부력, 목조, 판자, 움막 천막, 쉼라이트, 비니루, 기타

- ⑲ 건축형태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진, 대수선, 주요변경, 용도변경, 지붕수리, 기타
- ⑲ 주 거 : 주거용
- ⑲ 비 주 거 : 차고, 세차장, 변소, 집포, 창고, 사무실, 공장, 축사, 공장현장사무실, 현장 창고, 기타
- ⑲ 부수시설 : 대문, 물탱크(가정용), 굴뚝, 우물덮개, 옥탑, 차평막(가정용), 장독대, 망루, 연탄판
- ⑲ 비건물 : 기초공사, 적치물, 옹벽, 변압기, 맨홀, 공원행취, 기타
- ⑲ 원 일 : 처리일자
- ⑲ 처리구분 : 집계표 내용중 하나
- ⑲ 확인자인 : 구, 출장소 단속계장

적법및행정조치	소 계		소 계		소 계	
	허가 신고 기한부신고 미화지시 재개발 현지개발 가수용 건물이동		허가 신고 기한부신고 미화지시 재개발 현지개발 가수용 건물이동		허가 신고 기한부신고 미화지시 재개발 현지개발 가수용 건물이동	

본청	⑲ 원 일 정 서 교 합 계 장			
	원 일	정 서	교 합	계 장

구청	담당자	주 도 도 과 장	처리확인관

본청	구분 단속계 확수계	담당	계장	과장

197 제 4 학 후 관 독 및 처 리 조 서

②저서번호: 단속 2064.51 ~ (7 . . .)
 주 續
 ③보고번호: 건축 2064.51 ~ (7 . . .)

① 도역번호 구 동

④구분 ⑤건물번호	⑥ 관 독 사 항 (본청)							⑭ 현 지 조 사 확 인 사 항 (구. 동)										⑮ 판 정 및 처 리 (구)						⑯ 중 경 처 리 (본청)		⑰ 미 결 사 유 (본청, 구청)			
	위 치		⑩ 건축	⑪ 추정	⑫ 발생	⑬ 건축	⑮ 위 치	⑯ 전	⑰ 건	⑱ 적 범 및 행 정 조 치 내 용			⑲ 대 지	⑳ 지 구	㉑ 구	㉒ 건축	㉓ 건 물		㉔ 부 수	㉕ 비	㉖ 일	㉗ 처 리	㉘ 확 인 자	㉙ 내 용	㉚ 보 조 도	㉛ 월	㉜ 구 분		
	⑦ 행 정 동	⑧ 통 반	⑨ 시기	명 수	구 분	형 태	번 지, 호	축 주	건 명	⑲ 구 분	⑲ 년 월 일	⑲ 번 호	⑲ 휘 급 부 서	⑲ 확 인 자	소 유 구 분	지 구 구 분	구 조	㉒ 형 태	㉓ 주 거	㉓ 비 주 거	㉔ 시 설	㉔ 건 물	㉖ 일	㉗ 구 분	㉘ 인	㉙ 검 토 필	㉚ 정 리 필	㉛ 일	㉜ 구 분 (내 용)

< 조 서 기 재 요 령 >

- ① 구 분: 허가, 신고, 기한부신고, 미화지시 재개발, 현지개발, 가수용 건물이동
 ② 휘 급 부 서: 시, 구, 동
 ③ 확 인 자: 휘 급 부 서 의 확 인 자 인
 ④ 대 지 소 유 구 분: 공공용지, 타인대지, 자기대지
 ⑤ 지 구 구 분: 그린벨트, 공원녹지, 하천부지, 도로부지, 농촌지구, 주택지구
 ⑥ 구 조: 철근, 연와, 부력, 목조, 판자, 옴막, 천막, 셸라이트, 비니루, 기타
 ⑦ 거 속 형 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주요변경, 용도변경, 지붕수리, 기타
 ⑧ 주 거: 주거용
 ⑨ 비 주 거: 차고, 세차장, 변소, 점포, 창고, 사무실, 공장, 축사, 공장현장사무실, 현장창고, 기타
 ⑩ 부 수 시 설: 대문, 물탱크(가정용), 굴뚝, 우물열개, 옥탑, 화판막(가정용), 장독대, 양루, 연탄판
 ⑪ 비 건 물: 기초공사, 적치물, 옹벽, 변압기, 맨홀, 공원벤취, 기타
 ⑫ 월 일: 처리일자
 ⑬ 처 리 구 분: 집계표내용중 하나
 ⑭ 확 인 자 인: 구, 출장소 단속계장

⑮ 집계표(처리구분) 합계

적 범 및 행 정 조 치	소 계	처 리 중 결	소 계	처 리 미 결	소 계	처 리 미 결
허 가			철 소		진 행	
신 고			기 공		재 판 독	
기 한 부 신 고			공 인		재 분 류	
미 화 지 시			허 가 위 반			
계 개 발			신 고 위 반			
현 지 개 량			부 수 시 설			
가 수 용			비 건 물			
건 물 이 동			임 의 사 항			
			봉 보 사 항			

⑮ 판 독 본 청	⑮ 처 리 지 시 확 인 관
년 월 일	

⑮ 동	⑮ 조 사 자 직 성 명	⑮ 계	⑮ 사 무 장	⑮ 동 장
	월 일			

조서

② 지시번호 : 단속 2054.51 ~ (7)
 주백
 ③ 보고번호 : 건축 2054.51 ~ (7)

④ 건물번호	③ 판정및처리(구)				⑤ 종결처리(본청)		⑥ 미결사유(본청,구청)	
	⑦ 비 입 일	⑧ 월 일	⑨ 처 리 구 분	⑩ 확 인 자 인	⑪ 내 용 검 토 필	⑫ 보 조 도 정 리 필	⑬ 월 일	⑭ 구 분 (내 용)

(처리구분) 합계

① 가 ② 고 ③ 고 ④ 처 ⑤ 리 ⑥ 발 ⑦ 양 ⑧ 용 ⑨ 동	소 계		소 계		⑩ 판 본 년 월 일	⑪ 관 독 년 월 일	⑫ 처 리 지 시 확 인 관
	처 리 종 결	철 거 기 공 공 허 가 위 반 신 고 위 반 부 수 시 설 비 건 물 임 의 사 함 분 보 사 함	처 리 미 결	진 행 중 재 판 독 재 분 류			
					⑬ 조사자 직성명		
					월	일	⑭
							사무장
							동장

<별지 제 2 호 서식>

분류기호

발신일자: 1975. . .

경 유 보고통제관

발신기관명:

수 신 서울특별시장

참 조 단 속 과 장

보고종별	월 보
승인번호	
보고기일	익월 3 일

제 목 신발생무허가건물처리상황보고

구 분		형태별	신 축	증 개 축	가 실 물	계
처리 진수	당 월					
	누 계					
예치 방리 단진 속수	당 월					
	누 계					

- 부표: 1. 단속수단별 처리현황
 2. 발생지역별 현황
 3. 구조 및 용도별 현황
 4. 규모별 현황

구 분		항 목 별	신 속	증 개 속	가 실 물	계
계		당 월				
		누 계				
국 공 유 지		당 월				
		누 계				
사 유 지		당 월				
		누 계				
내 외	그린벨트	당 월				
		누 계				
	공원녹지	당 월				
		누 계				
	하천부지	당 월				
		누 계				
	도로부지	당 월				
		누 계				
	자기매지	당 월				
		누 계				
	타인매지	당 월				
		누 계				
	기 타	당 월				
		누 계				

<부표 4>

규 모 별 현 황

구 모 별 구 조 별		3 명 미 만				3 ~ 10				10 ~ 20				20 명 이 상				계				
		신 축	증 개 축	가 설 물	소 계	신 축	증 개 축	가 설 물	소 계	신 축	증 개 축	가 설 물	소 계	신 축	증 개 축	가 설 물	소 계	신 축	증 개 축	가 설 물	소 계	
계	당 월																					
	누 계																					
월 간	당 월																					
	누 계																					
연 와	당 월																					
	누 계																					
부 력	당 월																					
	누 계																					
무 조	당 월																					
	누 계																					
관 자	당 월																					
	누 계																					
움 막	당 월																					
	누 계																					
천 막	당 월																					
	누 계																					
기 타	당 월																					
	누 계																					

사 령

○ 1975. 5.21

영등포구 지방행정 주 사 보 민 육 현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6 월에 처함.

양서출장소 지방행정 서 기 보 임길 태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2

호의 규정에 의거 전채에 처함.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양서출장소 지방행정 주 이 주로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

서대문구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주 우철 계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2

호의 규정에 의거 전채에 처함.

○ 1975.5.22

영등포구 지방행정 사 무 관 박 여 수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5.5.23

보건예방과 지방보건 기 과 이 여 중

지방공무원법제 65 조의 21 항

1 호규정에 의거 그 직위 를 해지함.

○ 1975.5.24

대현삼배수 지방전기 지 사무소 기 사 김 복 동

지방공무원법제 63 조 1 항 3 호

규정에 의거 휴직을 명함.

○ 1975.5.26

기획관리관실 서 기 관 김 수 철
기획담당관

산업국 양점과장에 보함.

수 도 국 서 기 관 신 성 호
경리과장

보건사회국 사회과장에 보함.

보건사회국 서 기 관 김 진 호
사회과장

수도국 경리과장에 보함.

○ 1975.5.27

의 약 과 지방약무 기 과 김 상 우

지방공무원법제 65 조의 2 제 1 항

1 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 를 해제함.

○ 1975. 5.28

시 민 과 지방행정
주 사 보 정 진
지방공무원법제 63 조제 3 호의
규정에 외거 휴직을 명함.

○ 1975.5.30

보건예방과 지방보건
기 사 장 두 승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 울 특 별 시 장